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. 1. 14 선고 2021가단73556(본소), 2021가단83324(반소) 판결
[계약금 등 반환청구 · 계약금 등 반환청구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

담당변호사 박상도

피고(반소원고)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양근

변론 종결2021. 12. 10.

판결 선고2022. 1. 14.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는 원고(반소피고)에게 71,5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0. 6. 2.부터 2022. 1. 14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(반소피고)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,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30%는 원고(반소피고)가, 나머지는 피고(반소원고)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(본소)

주위적으로,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 한다)에게 104,596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2. 3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(반소)

원고는 피고에게 71,500,000원 및 위 금원 중 42,900,000원에 대하여는 2020. 9. 2.부터, 28,600,000원에 대하여는 2020. 9. 24.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완제 의약품, 의약외품, 화장품, 의료용품 등의 제조,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, 피고는 'C'이라는 상호로 포장기계 및 포장재 제조업 등을 하는 자이다.

나. 원고는 2020. 5. 25. 피고와 사이에 마스크 자동포장기계(이하 '이 사건 기계'라고 합니다)를 계약금액 130,000,000원(부가세 별도), 납기를 발주 후 90일 이내로 정하여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고 한다).

다. 원고는 2020. 6. 2.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71,500,000원(부가세 포함)을 지급하였고, 피고는 2020. 9. 11. 원고의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납품하였다.

라. 그런데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마스크가 제대로 포장되지 않자, 원고는 2021. 2. 2.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표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, 다음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주장

1)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제되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기 지급한 계약금 71,250,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 또한 이와 별도의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리라 믿고 이 사건 기계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포장 필름용지 중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포장 필름용지(재고량) 가액 합계 33,096,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공산품	45,600	32,100	13,500	336	4,536,000
KF-94일반	151,860	83,860	68,000	336	22,848,000
KF-94 홈쇼핑	34,990	17,990	17,000	336	5,712,000
	33,096,000				

2) 예비적 청구 만일 이 사건 계약의 해제가 부적법하다면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및 하자 수리기간 동안 원고가 포장작업을 하지 못하여 입게 된 영업상 손해 등으로 합계 100,000,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.

나. 주위적 청구에 판단

1) 이 사건 계약 해제 여부 민법 제668조는 "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"고 규정하고 있는바, 여기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은,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(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10다10252 판결 등 참조).

갑 제4,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D(주)에 대한 감정촉탁결과(피고는 감정인의 선서가 없었으므로 감정평가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, 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르면, 법원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바, D(주)는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여 선서 없이도 위 사무소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그 증거능력이 있음)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

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, 원고가 2021. 2. 2.경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는바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그 무렵 또는 늦어도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무렵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것이다.

① 원고는 2020. 9. 10.경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은 이후부터 2021. 2.경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때까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, 피고는 2021. 4.경까지 약 7개월에 걸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보완하였으나 마스크 포장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.

② 이 사건 기계로 마스크를 포장한 제품은 우측면이 파열되거나 포장지의 상단이 밀봉되지 않거나 마스크 구멍의 위치가 마스크 봉투의 하단 중앙에 생기는 등 총 12가지 부분에 하자가 있고, 그 하자의 양상이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이 사건 기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2)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기 지급받은 71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을 받은 날인 2020. 6. 2.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. 1. 14.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하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)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갑 제6,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주장하는 마스크 포장 필름 용지 구입비용은 이 사건 기계의 하자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가사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①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은 2020. 9.경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주장하여 오다가 2021. 1. 26. 이 사건 기계의 가동을 중단하였음에도 2021. 1. 19.부터 같은 달 26.까지 사이에 위 포장 필름 용지를 구입하였다.

② 원고는 위 포장 필름 용지를 이용하여 일부는 마스크 포장 봉투를 생산하였고, 위 포장 필름을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.

다.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

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,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주장

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계 납품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,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중도금 42,900,000원 및 잔금 28,600,000원, 합계 71,5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,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박숙희